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 변경 사유 (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 변경 허용)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재고용 허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사업장 변경 가능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장 변경 추진 체계

○ **사업주**

-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필요**

★ 사업주 유의사항

사업장 변경 중인 외국인을 고용허가 받지 않고 일당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고용법)**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제한 처분(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1조제2항)

○ 외국인근로자

-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기간 내에 일당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간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국내 체류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1조제1항)

★ 고용변동 및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변동 신고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함을 알려주세요.

★ 알선 유효기간 내에 채용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주세요.

★ 사업장 변경자의 구직유효기간(3개월) 내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